

6. 小型住宅建設 擴大 指針

資料提供：建設部

1. 근 거 :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2. 내 용

국민주택규모 건설의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실시함.

구 분	종 전	조 정
국민주택규모 건설의무비율	총건설호수의 70% 이상 (단, 18평 이하 : 35% 이상)	총건설호수의 75% 이상 (단, 18평 이상 : 40% 이상)

3. 적용대상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제외한 사업

단, 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계획법 등에 의거 계획적으로 일단의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전체지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에 의한 주택조합중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건립 및 운용에 관한 지침(주정30400-7671, '91. 3. 23)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사업지침(도정30320-23220, '90. 9. 5)을 따름.

나. 기존주택과의 환경유지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시 행 일

본 지침은 92. 7. 1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과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건설 2백만호 앞당겨진 내집마련